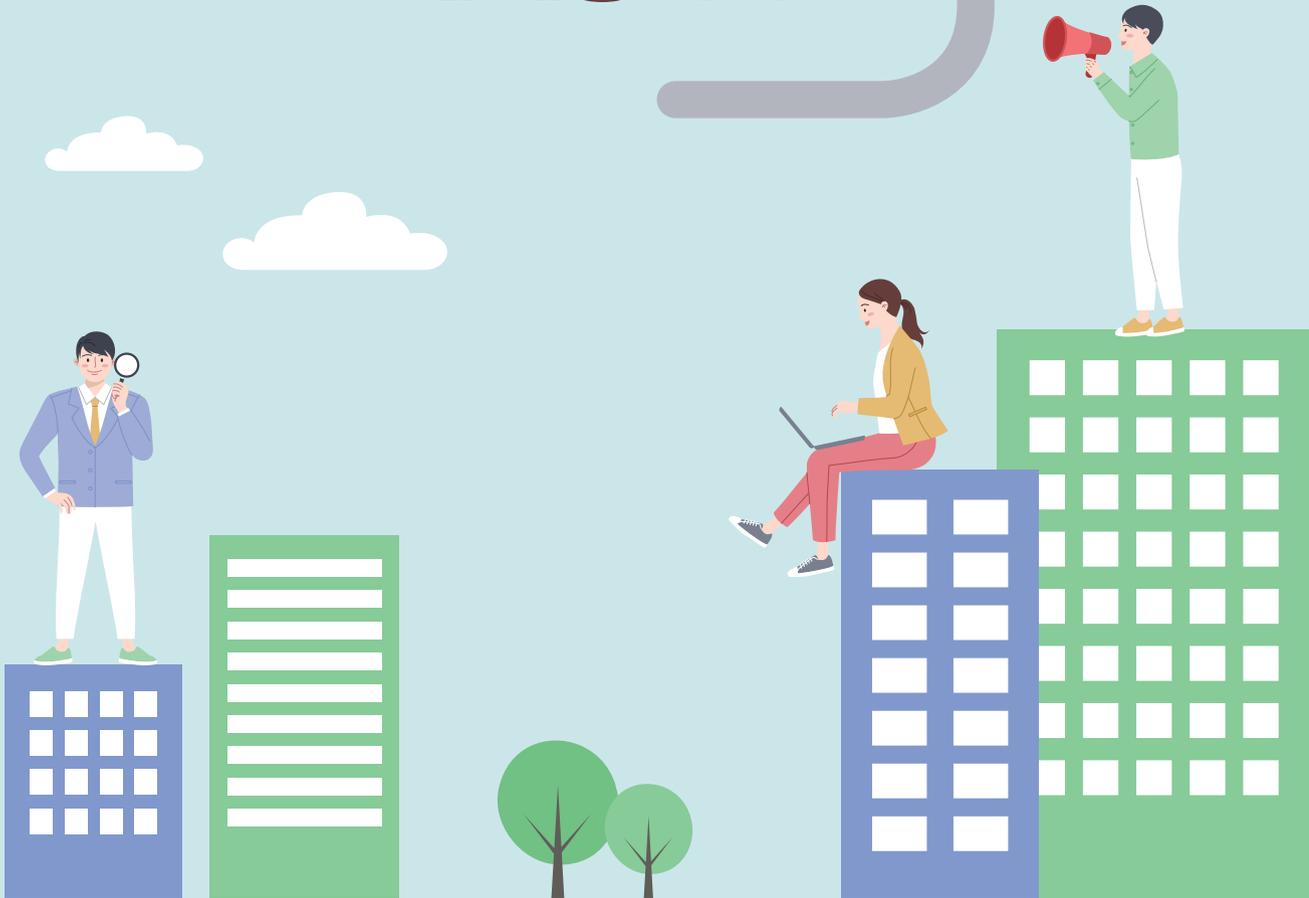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가이드





목차



I. 조례 제정 가이드 개요

1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2

2. 조례 제정 가이드 활용 안내

5



II. 진로교육 조례 현황 및 제정 절차

7

1.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

8

2. 조례 제정 효과 분석

14

3. 조례 제정 방향 및 추진 절차

16



Ⅲ.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 1. 시도 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 3. 조례 제정 시 고려사항 30



Ⅳ.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 33

- 1. 조례 제정 사례1: ○○광역시 ○○구(군) 34
- 2. 조례 제정 사례2: ○○○도 ○○시(군)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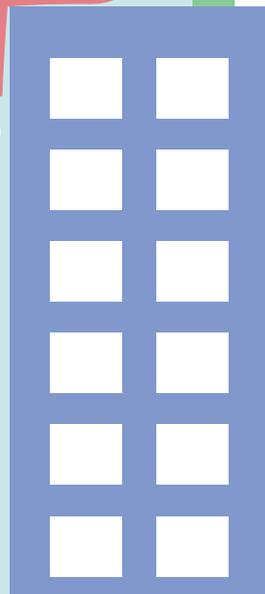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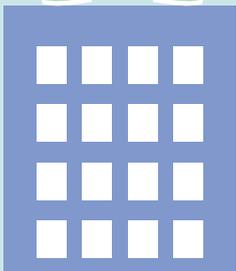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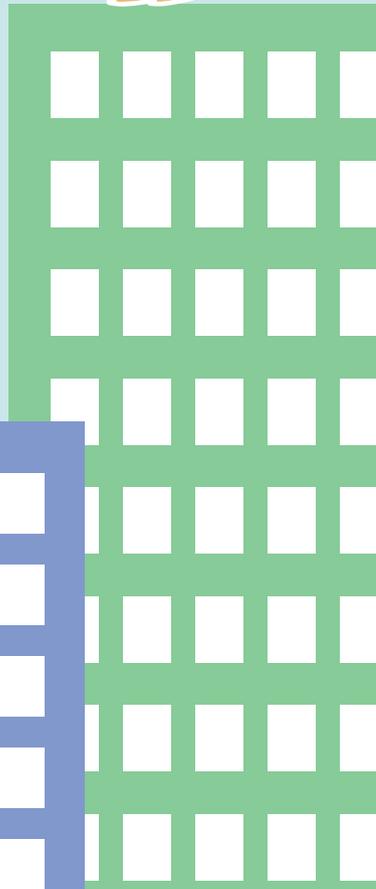
참고문헌 39

부록 41

I. 조례 제정 가이드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2. 조례 제정 가이드 활용 안내





I. 조례 제정 가이드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진로교육법」은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23일 시행되었음.
 - 진로교육을 모든 학생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
 -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진로교육법」은 국가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방침과 운영 방향을 최소한으로 적시하였기에 지역 단위 조례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진로교육 학습생태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진로교육법」 내 지역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근거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자료: 「진로교육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36호, 2015.6.22.제정]

● 학생의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운영하려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 내 진로체험 자원을 발굴·관리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설계 활동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다수의 센터가 인력·예산 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며, 센터 운영의 질과 성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함.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처 등 진로체험 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함.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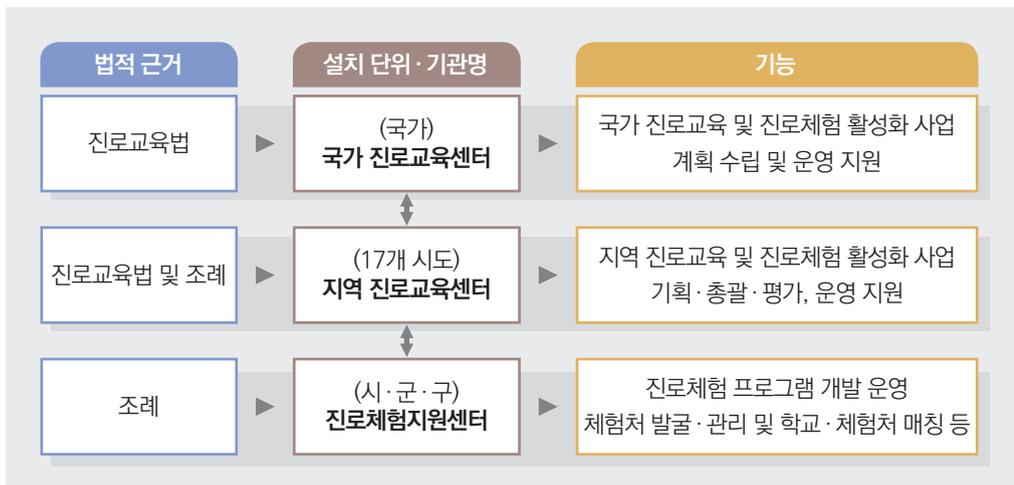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진로교육법」 제16조, 제18조를 토대로 함.
- 센터의 조직 구성, 예산·인력지원 등 구체적인 운영·관리의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현재 전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초 지자체(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초 지자체 조례가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부-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협약’(2015.6.3.)에서 기초 지자체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 권장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원하여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의 질적 발전을 도모함.

- 시도 교육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지속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 진로체험지원센터 조례 제정을 통해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 제도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체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1-1 | 진로체험 지원 추진 체계 및 법적 근거



출처: 교육부(2021)에서 일부 재구성



참고해주세요!

‘지역 진로교육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서로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 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청 단위의 실행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진로체험 관련 업무를 위한 보조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지역 진로교육센터의 진로체험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이자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지자체 단위 집행기관이 ‘진로체험지원센터’입니다.

2

조례 제정 가이드 활용 안내

● 목적

- 시도 교육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시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함.

● 대상

- 본 가이드는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담당자,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등 지역사회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관계자들을 위한 자료임.

● 주요 내용

-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
- 진로교육 조례 제정 효과 분석
- 조례 제정 방향 및 추진 절차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및 조례 제정 시 고려사항
- 조례를 제정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례

● 자료 유형 및 보급

- 유형: 조례 제정 가이드 1종 (책자 및 PDF 파일)
- 보급: 조례 제정 가이드 책자를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자,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등에게 배포하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및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에 탑재 및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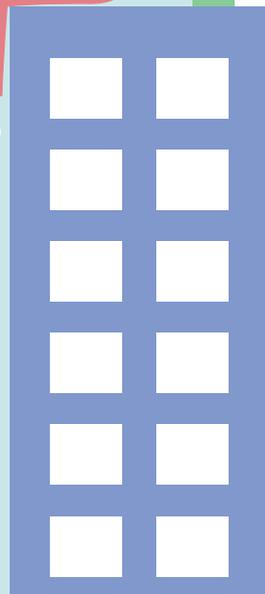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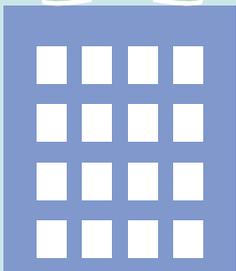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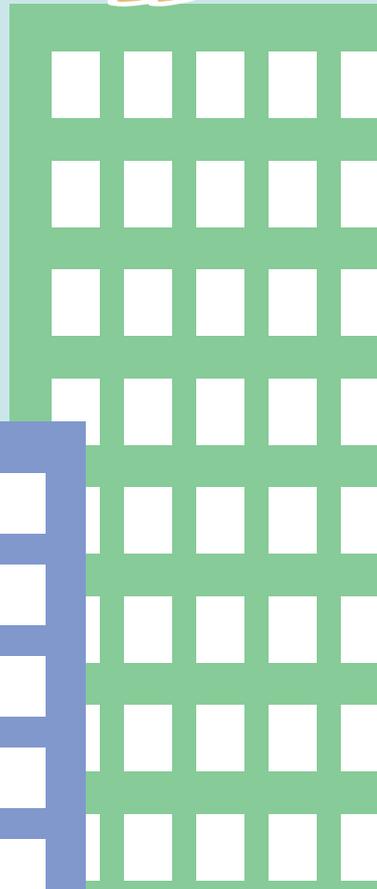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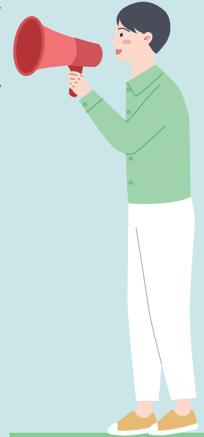


II. 진로교육 조례 현황 및 제정 절차

1.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

2. 조례 제정 효과 분석

3. 조례 제정 방향 및 추진 절차





II. 진로교육 조례 현황 및 제정 절차



1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¹⁾



일러두기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조례는 시도 교육청,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시도 교육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정된 진로교육 조례에 대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에 초점을 두고**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2년 6월 기준, 진로교육 조례는 총 94개이며 시도 교육청 조례가 20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74개임.
 -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조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에 제정되어 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는 17개 시도 중 2개 시도(대구, 광주)에 제정되어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는 228개 시·군·구 중 72개 지역에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비율은 31.6%임.

1)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은 「법령 분석을 통한 지역 진로교육 협력 체계강화 방안(정지은, 2021)」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표 II-1 |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

구분	기관 수	조례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교육청*	17	20	1	1	2	2	1	1	1	1	2	1	1	2	-	1	1	1	1
광역 지방자치단체	17	2 (11.8%)	-	-	1	-	1	-	-	-	-	-	-	-	-	-	-	-	-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	72 (25.2%)	15	16	5	1	3	2	1	-	17	-	-	2	-	4	2	4	-

출처: 「법령 분석을 통한 지역 진로교육 협력 체계강화 방안(정지은, 2021)」 p.15를 참조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의 최신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음. (검색일 2022. 6. 22.)

주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진로',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 키워드를 검색하였음.

1)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

- 전북 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진로교육 조례를 제정하였음.
- 대구, 인천, 경기, 충남 교육청은 진로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 외에 진로교육 관련 센터 또는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였음. (부록 <표 1> 참조)
-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지역은 11개 지역임.

표 II-2 |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용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조항	센터 명칭	조례 주요 내용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인력, 업무, 위임·위탁
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도 조례 제정	진로체험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인력, 운영 방식, 업무, 지원체계 구축, 이용 대상 등

연번	지역	조례명	조항	센터 명칭	조례 주요 내용
3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제4조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센터의 업무 등
4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제11조	구·군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업무, 운영 방식 등
5	경기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도 조례 제정	지역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인력, 업무, 시설 및 지원체계, 업무 위탁, 이용 대상 등
6	강원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센터의 지역 연계 등
7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지역 진로교육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센터의 업무
8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시·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인력, 업무, 운영 및 관리, 지역 연계 등
9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업무
10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업무
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센터의 설립 근거 센터의 지역 연계 등

출처: 「법령 분석을 통한 지역 진로교육 협력 체계강화 방안(정지은, 2021)」 p.19~21을 바탕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함. (검색일 2022. 6. 22.).

주1) 전북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주2) 부산, 광주, 전남, 세종은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3) 대구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으나 대구의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성격이 다르므로 표에서 제외하였음.

주4) 세종은 교육지원청이 없으며 현재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

- 광역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는 17개 지역 중 대구, 광주 2개 지역에 제정되어 있음.

표 II-3 | 광역 지자체 진로교육 조례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용 현황

지역	조례명	센터 명칭	조례 주요 내용
대구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 조직 및 인력, 지원체계, 이용 대상, 지도·감독, 협의체 구성 등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	진로체험지원센터	시장의 책무, 업무, 시교육감과의 협력, 협력체계 구축, 보조금 지원 및 준용 규정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진로',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였음 (검색일 2022. 6. 22.)

-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는 228개 지역 중 72개(31.6%) 지역에 제정되어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는 부산의 조례 제정 비율이 100%로 모든 기초 지자체에 진로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강원, 충북, 전북, 제주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표 II-4 | 기초 지자체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28	25	16	8	10	5	5	5	-	31	18	11	15	14	22	23	18	2
조례 제정 수	72	15	16	5	1	3	2	1	-	17	-	-	2	-	4	2	4	-
조례 제정 비율(%)	21.6	40.0	100	62.5	10.0	60.0	40.0	20.0	-	54.8	-	-	13.3	-	18.2	8.7	22.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진로',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였음. (검색일 2022. 6. 22.)

-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는 ‘진로교육 활성화’(12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65개)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됨.

표 11-5 | 기초 지자체 진로교육 조례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용 현황

연번	구분	조례명		연번	구분	조례명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체험지원 센터 설치·운영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체험지원 센터 설치·운영
1	서울 강동구		●	37	인천 미추홀구		●
2	서울 강북구		●	38	광주 남구		●
3	서울 강서구		●	39	광주 북구		●
4	서울 광진구		●	40	광주 서구		●
5	서울 노원구		○	41	대전 서구	●	○
6	서울 동작구		●	42	대전 유성구	●	○
7	서울 마포구	●	○	43	울산 동구		●
8	서울 서대문구		●	44	경기 고양시		●
9	서울 서초구		○	45	경기 구리시		●
10	서울 성동구		○	46	경기 김포시		○
11	서울 성북구		●	47	경기 남양주시		●
12	서울 송파구		●	48	경기 동두천시		●
13	서울 양천구	●	○	49	경기 부천시		○
14	서울 영등포구		○	50	경기 수원시		○
15	서울 중구		●	51	경기 안산시	●	○
16	부산 강서구		●	52	경기 안성시		●
17	부산 금정구		●	53	경기 안양시		○
18	부산 기장군		●	54	경기 여주시		●
19	부산 남구		●	55	경기 오산시	●	○

연번	구분	조례명		연번	구분	조례명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체험지원 센터 설치·운영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체험지원 센터 설치·운영
20	부산 동구		●	56	경기 용인시		○
21	부산 동래구		●	57	경기 의정부시	●	○
22	부산 부산진구		●	58	경기 파주시	●	○
23	부산 북구		●	59	경기 포천시		●
24	부산 사상구		●	60	경기 화성시		○
25	부산 사하구		●	61	충남 논산시	●	○
26	부산 서구		●	62	충남 서산시		
27	부산 수영구		●	63	전남 강진군	●	○
28	부산 연제구		●	64	전남 곡성군		●
29	부산 영도구		●	65	전남 무안군		●
30	부산 중구		○	66	전남 여수시		
31	부산 해운대구		●	67	경북 영주시		●
32	대구 달서구			68	경북 포항시		●
33	대구 달성군	●	○	69	경남 고성군		○
34	대구 북구			70	경남 거제시		●
35	대구 수성구			71	경남 진주시		
36	대구 남구	●		72	경남 창원시		●

출처: 「법령 분석을 통한 지역 진로교육 협력 체계강화 방안(정지은, 2021)」 pp.23~24를 바탕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함. (검색일 2022. 6. 22.)

주1) ○: 조례명은 '진로교육 활성화' 또는 다른 조례명이지만, 내용 안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포함된 경우 표기함.

주2)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 제정 센터는 64개임(광주 북구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센터 없음).

2 조례 제정 효과 분석

-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 제정 유무별로 진로체험 효과 분석을 실시함.
 -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기초 지자체(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 효과 분석 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설정함.
 -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 중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유무에 따른 진로체험 효과(성과)를 분석함.
 - 진로체험 효과(성과)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인력(근무 인원), 진로체험처 및 인증기관, 학생 대상 센터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분석함.
-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유무별 성과 현황 1: 센터 예산 및 인력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된 센터의 총예산은 센터당 평균 326.6백만 원으로 나타나 미제정 센터(101.5백만 원) 보다 총예산이 3배 이상 많음.
 - 조례 제정 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은 센터당 평균 215.6백만 원으로 미제정 센터(47.9백만 원)보다 지자체 지원 예산이 4.5배 이상 많음.
 - 조례 제정 센터의 인력(근무 인원)은 센터당 평균 4.7명으로 미제정 센터(3.4명)보다 1.3명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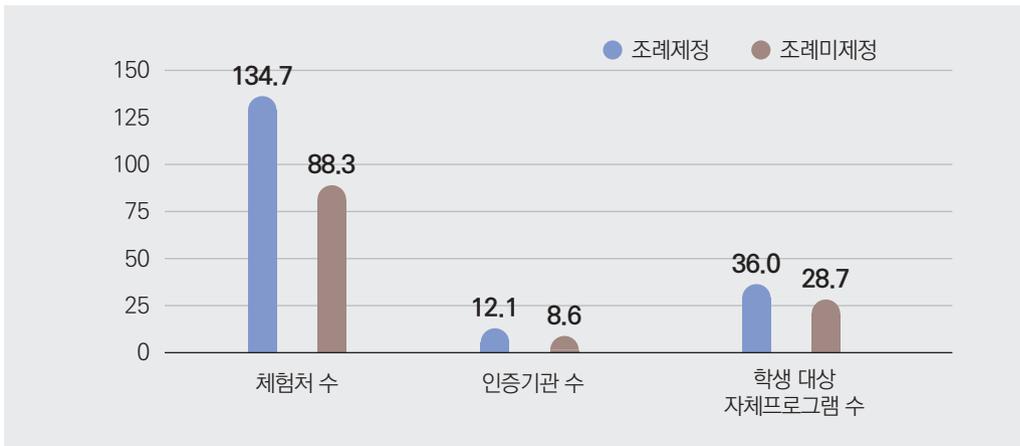
표 II-6 | 기초 지자체 조례 유무별 성과 현황 1: 센터 예산 및 인력(센터당 평균)

구분	총 예산 (백만 원)	지자체 지원 예산 (백만 원)	근무 인원 (명)
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 센터(64개)	326.6	215.6	4.7
기초 지자체 조례 미제정 센터(159개)	101.5	47.9	3.4
전체(223)	166.1	96.0	3.8

●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유무별 성과 현황 2: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 조례 제정 센터의 체험처 수는 센터당 평균 134.7개로 나타나, 미제정 센터(88.3개)에 비해 체험처 수가 1.5배 이상 많음.
- 조례 제정 센터의 진로체험 인증기관 수는 센터당 평균 12.1개로 나타나, 미제정 센터(8.6개)에 비해 3.5개가 많음.
- 조례 제정 센터는 학생 대상 센터 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수가 센터당 평균 36.0개로 나타나, 미제정 센터(28.7개)에 비해 7.3개가 많음.

그림 II-1 | 기초 지자체 조례 유무별 성과 현황 2: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센터당 평균)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된 센터가 미제정 센터보다 성과가 높게 나타남.

- 조례 제정 센터가 미제정 센터에 비해 센터 예산 및 인력, 체험처 수, 자체 프로그램 수 등 모든 면에서 진로체험 관련 성과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조례 제정 센터가 미제정 센터보다 총예산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례 제정이 센터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줌.
- 조례 제정이 진로체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례 제정 효과 분석 결과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진로체험 성과 제고를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함.

3

조례 제정 방향 및 추진 절차²⁾



일러두기

본 가이드는 시도 교육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때 염두해야 할 기본방향과 입법 추진 절차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 조례 제정 기본방향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하려는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함.**
 - 모든 국민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 지역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중요성 등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교육청, 지자체,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체험 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조례 제정 주체가 시도 교육청 또는 지자체이더라도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지역 내 진로전담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진로체험 관계자들 간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논의를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주체별 역할, 기능 및 협력 범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당시 기초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설치한 지역의 경우 운영비 부담 주체, 업무 협력 범위 등을 협약 내에 규정하였음.

2) '조례 제정 방향 및 추진 절차'는 「2018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길라잡이(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p.34~36과 「법령 분석을 통한 지역 진로교육 협력 체계강화 방안(정지은, 2021)」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역할 및 지원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한다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 **임의규정(~할 수 있다) 과다 사용, 선언적인 내용의 서술을 줄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하여 운영 절차 및 방법, 주체별 역할 등을 규정해야 함.**
 - 조례에 임의규정이 과다하면 조문 해석이나 적용상 문제의 소지가 늘어나고 법 개정이 잦아져 법의 안정성과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음.
 - 센터 설치 근거, 지자체와 교육감의 인력,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정(~해야 한다)으로 성문화하여 제정할 때 실효성이 높아짐.
- **상위 근거 법령인 「진로교육법」을 명시하고, 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주로 「진로교육법」 제16조, 제18조에 근거함³⁾.
 - 「진로교육법」에서 규정한 진로교육 주체별 역할, 특히 지자체의 역할을 조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함.
- **해당 지역의 시도 교육청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가 교육감, 교육장, 기초 지자체 단체장 등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진로교육 운영에 있어 역할 합의가 필요함.
 - 광역 단위 지역 진로교육센터-기초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연계, 광역-기초 단위 진로교육협의회 간 연계 역시 진로체험 기구 및 조직 간 역할 합의를 위해 세밀하게 규정해야 함.

3) 진로교육 조례 제정 시 지역 진로교육센터 조항 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포함한 조례는 주로 「진로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는 「진로교육법」 제18조에도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제도적 기반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진로교육법」 조항을 구체화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1.4.7.)」이 발의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성문화할 수 있음.

- 시도 교육청 조례는 협력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교육(지원)청과의 협력과 그 역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방향을 권장함.

2) 조례의 내용

- **조례 주요 구성 항목**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명칭·위치, 센터의 업무(역할, 기능), 운영 방법, 관리(위탁)의 주체, 지도·감독, 보고 절차, 진로체험 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야 함.
- 진로체험 활성화 및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진로체험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함.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인력·예산 부족의 어려움, 행정 업무 과다 등 센터 운영 관련 이슈에 대하여 담당 주체를 규정하고 확실한 제도적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표 II-7 | 조례 주요 구성 항목

구분	주요 구성 항목
기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 정의 (선언적 규정)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명칭·위치 • 센터의 업무(역할, 기능) • 센터 운영 방법(직영/위탁 등) • 관리(위탁)의 주체, 지도·감독, 보고 절차 등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예산 구조 (예산 확보 방법 및 예산 지원 주체 등) • 센터 인력 구성 및 활용 (직원 수, 자격 조건, 채용 가이드, 자원봉사 등 지원인력 활용 방안, 연수 등 직원 교육, 급여체계, 인센티브 등) • 센터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 (행정 업무 간소화 등)
위탁 운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기간, 위탁계약 내용, 계약 체결 절차,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 등

구분	주요 구성 항목
센터 이용 관련	• 이용 대상, 이용 시간, 휴관일, 이용료(비용) 등
진로체험 협력 지원체계 관련	• 진로교육 협력 지원체계의 역할, 기능, 인원 구성, 회의 운영 방법 등 •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등 지역 내 진로교육 핵심 조직의 설립 근거와 조직 간 연계성

출처: 「2018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길라잡이(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p.41~42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표 II-8 | 지방자치단체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구성	내용	비고
목적	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선언적 규정 대부분의 조례에 포함
정의	진로교육, 진로체험, 청소년, 자유학기(학년)제 등의 개념을 정의함	
설치·명칭·위치	해당 관할 구역을 명시하고 센터명과 위치를 정함	
사업·기능· 역할·업무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진로교육 자원 확보 3. 진로체험처 인증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 5.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6. 진로체험 기관 및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안내 제공 7.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8.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자유학기(학년)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10. 그 밖에 OO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사업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은 거의 유사함
인력	센터장(1명)을 포함하여 전문인력과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둔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운영 및 관리	운영 관리의 주체에 대한 명시 - 공공·민간 기관,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위탁 시 해당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름	직영·위탁
지도·감독	지자체장은 사업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은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탁 기간	예) 위탁 기간 3년,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음	위탁 운영 관련 내용

구성	내용	비고
계약 체결	예)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과 위·수탁 관련 계약을 체결함	
수탁자의 의무	예) 조례 관련 규정 및 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함을 명시	
위탁의 해지		
이용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역 외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개방하는 방향을 권장함
이용 시간	센터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음 (평일, 주말, 공휴일 등)	
휴관	센터 휴관일을 정할 수 있음 (매주 월요일 등)	
이용료	진로체험 이용을 무료로 하거나, 참가비,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음 이용료 감면 대상, 이용료 반환 등을 규정할 수 있음	
진로체험 협력·지원체계 구축	지역 진로체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지자체 등 종합적인 진로체험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함	

출처: 「2018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길라잡이(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p.41~42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3)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입법) 절차

-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
- 사전 준비 및 추진 과정
 - 지자체,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함.
 - 타 시군구 사례 조사, 지역민의 진로교육 요구 파악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함.

4) 기초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지역사회 진로체험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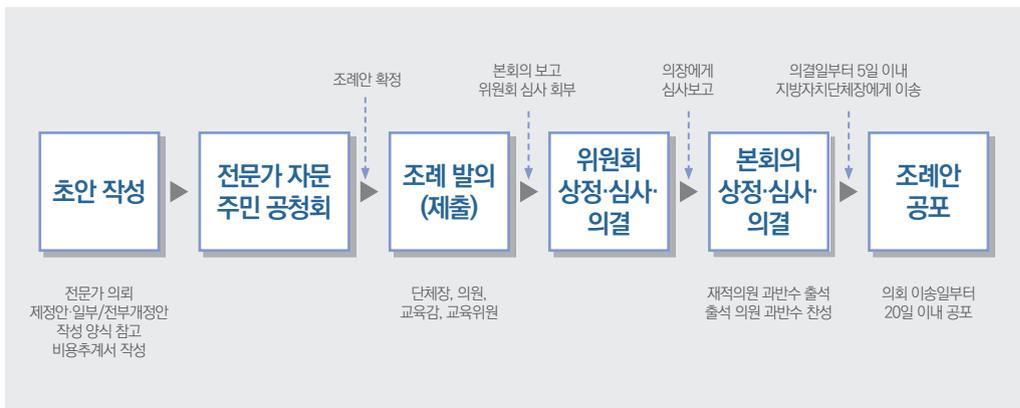
- 협의, 설득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함.
- 지자체-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함.

※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동기 부여를 위해 지자체 지원 진로관련 교육경비 적극 홍보(군정 홍보), 지역민의 진로교육 요구 제시 등이 필요함.

● 공식 입법 절차

- (1) 전문가 의뢰 및 진로체험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함.
 - (2) 초안이 확정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침.
 - (3)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
- ※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학부모, 지역사회 진로체험 관계자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중요함.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법안의 실효성과 질적 충실성을 높일 수 있음.
- (4) 입법 조례안 확정함.
 - (5) 발의자를 결정하고 찬성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함.
 - (6) 조례안 접수,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출함.
 - (7) 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심사·의결함.
 - (8) 조례안 공포 및 발표 절차로 이송됨.

그림 11-2 |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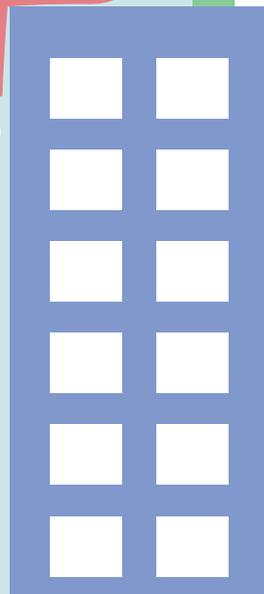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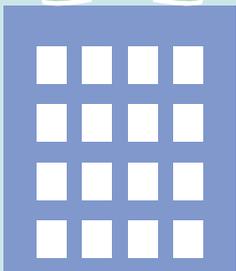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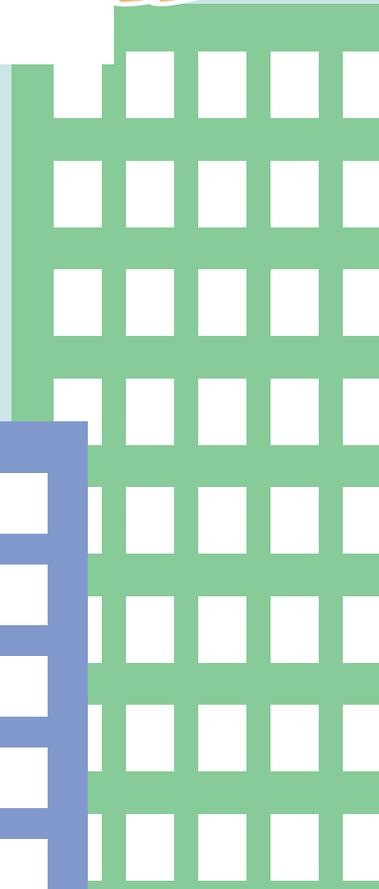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자치법규입법절차안내」와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절차」,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안내(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III.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시도 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조례 제정 시 고려 사항





Ⅲ.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시도 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⁵⁾

00도(광역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 제16조에 의하여 00도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취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진로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견학·체험을 하거나 학교 내외에서의 진로캠프, 진로특강, 가상직업체험을 포함한 모든 직업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00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지역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인력, 행정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로교육법」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작성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하였음. 이 조례안은 조례 개정시에도 참고 및 활용할 수 있음.

제4조(센터 위탁 운영)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초자치단체, 대학, 기업, 비영리사회단체 등 공공·민간 진로교육 전문기관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이 센터의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OO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업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진로교육 자원 확보
3. 진로체험처 인증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
5.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6. 진로체험처,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로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안내 제공
7.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8.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자유학기(학년)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10.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 및 지원체계)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센터에 제5조 제5호의 업무를 위한 진로체험 지원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센터가 진로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 등 보호자**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10:00 ~ 20:00, 토·일 10:00 ~ 18:00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토·일요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 ③ 센터장은 프로그램, 센터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4. 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외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진로교육 협력 지원체계 구축)

- 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기초 지자체, 지역 진로교육 유관 기관 간의 진로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② 지역 진로교육협력 지원체계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교육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역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0000호, 2022.0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⁶⁾

00군(시, 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 제16조에 **의하여** 00군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이 조례안은 경남 거제시, 울산 동구, 전남 무안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작성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하였음. 이 조례안은 조례 개정시에도 참고 및 활용할 수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OO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OO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 ② 시설의 명칭은 OO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군수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OO도 OO군(이하 “OO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④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인력, 행정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진로교육 자원 확보
3. 진로체험처 인증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
5.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6. 진로체험처,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로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안내 제공
7.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8.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자유학기(학년)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10.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 위탁 운영)

-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초자치단체, 대학, 기업, 비영리사회단체 등 공공·민간의 진로교육 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OO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위탁계약)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의 해지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시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수탁자는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 등 보호자**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10:00 ~ 20:00, 토·일 10:00 ~ 18:00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토·일요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 ③ 센터장은 프로그램, 센터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4. 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외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진로교육 협력 지원체계 구축)

- ① 군수는 센터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다양한 진로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시 진로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통해 진로교육 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역 교육감 및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2.0.00. 조례 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조례 제정 시 고려사항

● 목적

- 상위 근거 법령으로 「진로교육법」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관련 조항 등을 활용할 수 있음(2022년 6월 기준)
- 「진로교육법」 제18조 진로체험 지원 관련 조항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이를 근거 법령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의

- 진로교육, 진로체험 개념 외에도 자유학기(학년)제 등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용어 설명이 필요할 시 규정할 수 있음.

● 센터의 설치 및 업무

- 광역 단위 지역 진로교육센터와 기초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하나의 조례에 함께 서술할 수 있으나, 두 기관의 운영 목적과 역할 차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운영 방식과 세부 업무 내용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함.

● 센터의 위탁

- 센터를 위탁 운영할 시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 또는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지식 및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탁 운영 시 학기 시작 전 조기 계약을 추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1년 이내 단기 위탁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므로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있음.

● 진로교육 협력 지원체계

-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기초 지방자치단체, 학교, 진로체험처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체험 관계자의 협력 기구(조직)를 구성할 근거와 운영 방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 이용 대상 및 이용료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관내 학생에게만 제공하지 않고 전국으로 참여 대상을 개방하는 방향을 권장함.
- 학교 밖 청소년, 도서·벽지 소재 학교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학생 및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이용 대상에 학생 및 청소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학부모, 교사 등)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참가비, 재료비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이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과 이용료 면제 대상 및 방법 등을 조례에 포함할 수 있음.

● 운영시간과 휴관일

- 지역의 상황과 학생의 수요, 센터의 역량 및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기타(임의규정 등)

- 지역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 등을 강행규정으로 제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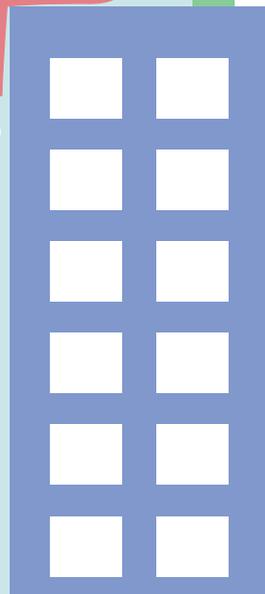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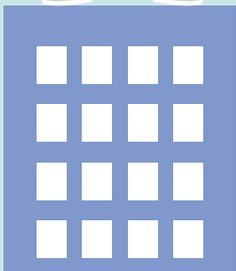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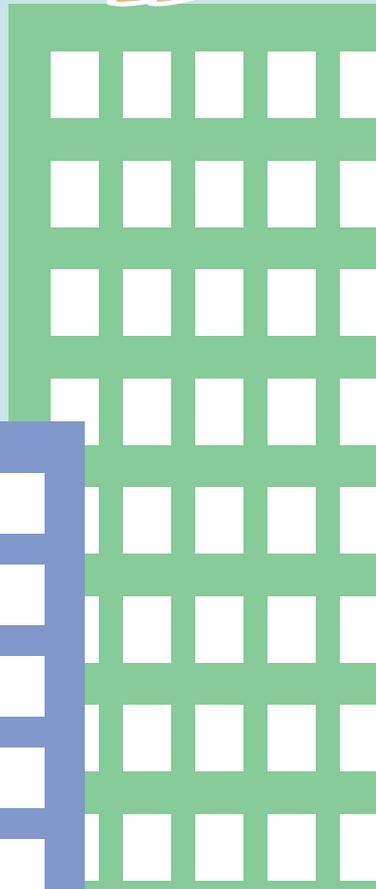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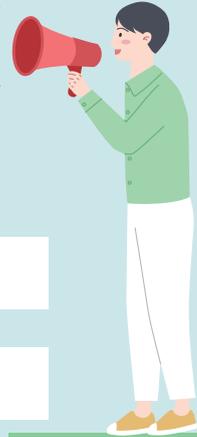
※ 적색 굵은 글자로 기재된 내용은 연구진이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내용으로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

1. 조례 제정 사례1: ○○광역시 ○○구(군)

2. 조례 제정 사례2: ○○○도 ○○시(군)





IV.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



1

조례 제정 사례1: ○○광역시 ○○구(군)

● 조례 제정 추진배경 및 목적

- 진로교육법 제정·시행 및 정부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시행
- 교육청-○○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 협약체결
- 진로교육법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과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조례 제정 추진 주체 및 역할

- 기초 지자체가 주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함.
-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계획 수립, 조례안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하여 조례 제정을 지원함.

● 조례 제정 과정

- 관련 법령 발췌: 진로교육법(제2조, 제16조, 제20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48조), 평생교육법(제5조)
- 조례 제정 계획 수립: 기초 지자체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협력 및 논의 계획 수립
- 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마련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보고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통보
-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시 애로사항 등

- 기초지자체 주도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 센터와의 논의 및 협력을 통한 사전 의견 조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센터 조직구성(인력), 보수 등에 관한 세부 내용(표준안 등)이 제외됨.
 - 기초지자체 주도로 조례 제정이 진행되어 의회 설득 등 추진과정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센터가 꼭 필요한 조항(인력, 보수 등 세부 내용)이 제외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 전년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지만 입법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 등으로 제정되지 못함.
- ※ 문제가 된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을 진행하고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여 조례 제정이 완료됨.

● 조례 제정 효과

- 조례 제정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존립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 확보, 안정적 센터 운영 등이 가능함.

2 조례 제정 사례2: ○○○도 ○○시(군)

● 조례 제정 추진배경

- 지역민의 진로 교육에 대한 요구 확대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 교육 확대
- 지자체의 진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조례 제정 목적

-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 함양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한 학생 스스로 미래 진로를 계획·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설계 및 현장 중심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 조례 제정 추진 주체 및 역할

- 기초 지자체, 기초 의회, 교육지원청(센터)이 협력하여 조례 제정 추진
- 교육지원청(센터):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제정에 필요한 사례 조사 분석, 진로교육 현황 및 관내 진로체험처 정보 공유
- 기초 지자체: 진로 사업 확대 및 조례제정을 위한 홍보, 유관기관 협의
- 기초 의회: 조례제정 관련 준비, 공감대 형성

※ 교육지원청이 조례 제정 제안, 기초 지자체 및 기초 의회 설득 등 조례 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조례 제정 과정

- 진로교육에 대한 기초 지자체 교육경비 사업 확대: 진로교육 사업에 대해 기초 지자체-교육지원청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 조례 제정 추진 계획 수립: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조례 제정 추진 계획 수립
- 기초 지자체-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간 의견 교환 및 협의
- 단체장(지자체장, 의장, 교육장) 간 협의: 기관장협의회 및 수시 만남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진 협의: 조례에 포함 될 내용 협의
-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타시군 사례 조사, 조례에 포함 될 내용) 의회 제출
- 조례 초안 및 의견서 제출
- 조례 제정 및 공표

● 조례 제정 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법

- 조례 제정에 대해 기초 의회의 반응은 적극적이었으나, 기초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인 편이었음.
- 단체장(지자체장, 의장, 교육장) 협의를 통한 조례 제정 필요성 공유로 조례 제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조례 제정 효과(결과)

- 센터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조례 제정 이후 20% 이상 예산 증가
- 행정적 지원 증가: 진로체험처 발굴 관련 협조, 신규 사업 예산 지원
- 학교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



참고해주세요!

위 사례2에서 조례 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만족도 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인식 전환, 둘째,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의 상시적 운영(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성과 공유, 지역민의 진로 프로그램 요구 공유), 셋째, 단체장(지자체장, 의장, 교육장) 협의 활성화(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 센터 설치 등 다양한 교육 현안 공동 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시 참고하세요!



참고문헌

- 교육부(2021). 2021년 제4차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 교육부 내부자료.
- 이명균·이일용(2017). [진로교육법] 입법과정과 그 쟁점에 대한 입법정책적 분석. 교육법학연구, 29(1), 119-146.
- 정지은(2021). 법령 분석을 통한 지역 진로교육 협력 체계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영준(2016). 「진로교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생학습사회, 12(3), 59-7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2018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길라잡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안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 2022년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 담당자 교육(기초)

인터넷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 6. 22.).

부록

부록 표 1 |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목록

지역	조례명	공포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2016. 7. 7.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2017. 7. 19.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2022. 4. 11.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6.12. 2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2021. 2. 22.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9. 2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3. 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2016.12. 3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2022. 4. 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2021. 4. 12.
경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5. 20.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0. 21.
강원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2. 28.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2022. 4. 8.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 2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12. 3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2. 18.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2. 28.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2021.12. 3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2016. 5. 16.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에 “진로”,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 키워드를 넣고 검색한 결과 학생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조례를 정리함(검색일: 2022.6.22.)

부록 표 2 | 광역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 목록

지역	자치단체	조례명	공포일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12. 30.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	2017.11. 15.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에 “진로”,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 키워드를 넣고 검색한 결과 학생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조례를 정리함(검색일: 2022.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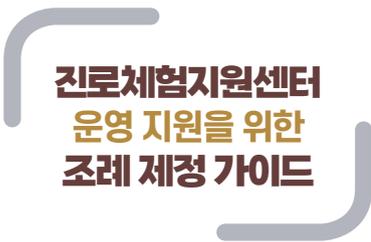
부록 표 3 | 기초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조례 목록

지역	자치단체	조례명	공포일(개정일)
서울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6. 22.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4. 5.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5. 15.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6. 29.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7. 18.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6.12. 8.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3. 21.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7. 8. 2.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2. 7.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9. 15.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4. 2.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5. 6. 11.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8. 5. 10.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10. 16.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7.11. 1.
부산	부산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2. 29.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8. 8.
	부산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12. 31.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2. 6.

지역	자치단체	조례명	공포일(개정일)
부산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10. 8.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9. 25.
	부산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 10.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2. 6.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12. 30.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7. 1.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2. 16.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12. 19.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2. 8.
	부산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7. 15.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2016. 7. 15.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2016.12. 20.
	대구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9.12. 30.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10. 5.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3. 30.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2. 20.
인천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5. 21.
광주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20.12. 30.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7.12. 29.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8. 26.
대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30.
	대전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5. 14.
울산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2. 17.
경기	고양시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20. 1. 7.
	구리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0. 11.
	김포시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경기도 김포시 조례)	2020. 7. 28.
	남양주시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 4. 6.
	동두천시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1. 22.

지역	자치단체	조례명	공포일(개정일)
경기	부천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11. 17.
	수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2021. 9. 28.
	안산시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7.
	안성시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 14.
	안양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9. 4. 10.
	여주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12. 26.
	오산시	오산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9.11. 8.
	용인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9. 4. 10.
	의정부시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9.
	파주시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 4.
	포천시	포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7. 1.
	화성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19.10. 18.
충남	논산시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0. 12.
	서산시	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	2021.11. 1.
전남	강진군	강진군 청소년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1. 13.
	곡성군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3. 18.
	무안군	무안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5. 16.
	여수시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	2018. 9. 18.
경북	영주시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	2018. 5. 9.
	포항시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5. 8.
경남	고성군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20. 5. 4.
	거제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3. 10.
	진주시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7. 17.
	창원시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2. 28.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에 “진로”,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 키워드를 넣고 검색한 결과 학생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조례를 정리함. (검색일: 2022.6.22.)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가이드

발 행 처 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 페이지 <https://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인 쇄 일 2022년 12월
발 행 일 2022년 12월
등 록 제16-1681호(1998.6.11.)
디자인·인쇄 (주)삼일기획 044-866-3011~4

※ 이 책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비매품/무료